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광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6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고광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
김영철, 김원태, 김종길,
김태수, 김현기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석, 박춘선, 신복자,
옥재은, 유정인, 윤종복,
이종태, 이종환, 최민규,
허 훈, 황철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자치구의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함. (안 제7조제1항제1호자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)
- 나.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분양대상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완화함. (안 제7조제1항제2호다목2) 및 같은 목 3)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주택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자목 중 “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”을 “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(단,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다목2) 중 “공동주택 20세대[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) 30세대] 이상”을 “공동주택 30세대[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] 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목 3) 중 “오피스텔 20실 이상”을 “오피스텔 30실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사목 중 “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”을 “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(단,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관한 사항. 다만, 분양대상
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
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
상으로 한다.

- 1) (생 략)
- 2) 공동주택 20세대[도시형
생활주택(원룸형) 30세
대] 이상

3) 오피스텔 20실 이상
라. ~ 바. (생 략)
사.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
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
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
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
항

② ~ ⑤ (생 략)

-----, -----

-----.

- 1) (현행과 같음)
- 2) 공동주택 30세대[「주택
법 시행령」 제27조제1항
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
우 50세대] 이상

3) 오피스텔 30실 이상
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
사. -----
----- 구청장이 심의가
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(단, 서울특별시 건축위원
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
항으로 한정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과 같은 조례 제7조(기능 및 절차 등)제7조제1항제1호 자목의 자구를 수정하고, 동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다목2)·제2호다목3)에 따른 구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목출의 요건을 완화(공동주택 20세대 이상 → 30세대 이상, 오피스텔 20실 이상 → 오피스텔 30실 이상)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